

September 15,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2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9. 7. ~ 9. 11.)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1]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2020. 8. 31. ~ 9. 8.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를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 ① 첨단 분야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외투 활성화를 통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② 첨단산업 및 R&D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 입주권 승인, ③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 신규 지정(한국유미코아, 라이언세미컨덕터) 등이 있음

[참고자료]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산자부2]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2020. 9. 8.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연구개발 샌드박스 도입, 민간부담비율 완화, 정성적 평가방식 도입), ② 성과 중심의 산업연구개발 체계마련(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 도입, 기업 연구개발은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 중심으로 기획관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기획관리 시스템 도입, 제조-서비스 연구개발 촉진, 기술혁신 전문기금 결성), ③ 개방형 혁신 강화(해외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 대폭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참고자료]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



[기재부] 한국판 뉴딜 등 적극행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

2020. 9. 10. 제37회 차관회의에서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우수사례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융복합 & 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② 소비 모멘텀 형성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6. 26.~7. 12.) 개최, ③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친 주류 규제개선, ④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 면제, 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한국판 뉴딜 등 적극행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지원



[중기부]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열어갈 인공지능 제조 체계 구축

2020. 9. 10.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결과 최종 엔에이치엔-케이티 컨소시엄이 선정됨. 세계 최초의 민관협력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지능형공장화와 제조데이터의 마이제조데이터 전환 추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 ② 솔루션 스토어를 통해 인공지능(AI) 스마트 공장 확산, ③ 마이제조데이터 기반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열어갈 인공지능 제조 체계 구축 착수



[금융위 · 금감원]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2020. 9. 10.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 간 상호원원의 장인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출범함. 주요 내용으로 ① 민관 합동 구성(손병두 부위원장, 정순섭 교수 공동주재), ②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조 등 각계 관계자를 균형 있게 포함, ③ 향후 대형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데이터 공유범위 등 최근 제기되는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임.

[참고자료]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 9.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64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어 공포함.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가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는 그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보험계리사·세무사 등을 추가하여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건전성 및 전문성 확보하려는 개정임

> 입법예고 법안

[환노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020. 9. 7.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시설관기기준 준수 등의 의무화)를 명확히 하고, ②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 등이 있음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9. 9.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외국인과의 합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공익성심사를 받게 함, ②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관련, 방지조치 이행 여부 검사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IoT 서비스는 소규모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 수준으로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 있음

[행안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0. 9. 9.부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고 등록대상을 확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함, ②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 데이터 제공요청서를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서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등10인)」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신설 등)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기존 10%의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하여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한도액을 연 1천만원까지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허용하여 지배주주의 경영권 상실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양질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하고, 주주에게는 고배당 기회 확대 등 효율적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확대하는 한편, OTT 사업자인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OTT 사업자가 아닌 제작자가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산업이 변화하는 인터넷·미디어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2항 신설)

[산자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 간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 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기재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5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이러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 해외재산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산자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2+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우려를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1년여가 지남에 따라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산자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있으나,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술탈취 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 추정은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산자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따른 법령 필요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기재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법률 위반 시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장증권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계약 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도입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6조의4 신설 등)

[정무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1인)」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를 활용해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을 예방하고 국민 거주공간에 대한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 법감정에 맞는 사모펀드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제2항제3호 신설)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